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득세법」 개정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0. ~ 12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부칙 제1조제4호 중 “2026년 1월 1일”을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 령 제10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1. ~ 3. (생략) 4. 별지 제24호의4서식(1)의 개 정규정: <u>2026년 1월 1일</u>	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 령 제10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2027년 1월 1일</u>